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8회 임시회
2021. 1.22.(금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진설

충청북도 자연순환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 숙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으로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과 도지사, 사업자,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자원순환연차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자원순환 통계조사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라. 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)

마.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9조 및 제10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으로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상위법령인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충청북도 차원의 자원순환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○ 또한, 상위법령에 준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으로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는 생산과 소비,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함.
- 안 제2조는 “자원순환”, “순환자원”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의함.

- 안 제3조는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을, 안 제4조는 자원순환 사회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5조는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 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는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·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한 충청북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8조는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, 지방공사, 출자·출연기관, 지방의료원,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에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자원순환 관련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'21. 1. 5.∽'21. 1.1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, 조례안 제8조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조문의 탄력성을 부여 자율규정으로 **"수정의결"**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 협의 조정 결과, 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의 우선구매의 취지를 살려 **"원안동의"** 하여 추진하는 사항임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 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으로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
○ 집행부에서는 ‘자원순환 시행계획’이 수립되면 국가의 중장기·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에 맞추어 충청북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.